

해운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

기간 : 7. 10 ~ 7. 14

한국선주협회 업무팀

의원 입법

- ①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

입법 예고 및 통과 법안

없 음

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- 발의일자 : 7월 12일
- 발 의 자 : 위성곤 · 이찬열 · 홍문표 · 여기구 · 정인화 · 김현권 · 오영훈 · 강창일 · 김한정 · 김두관(10인)
-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 - 내항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해 운임 및 요금의 일부 지원이 가능하되, 지원에 드는 비용의 50% 이상을 국가가 부담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여객선 <u>이용자에</u>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)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4조(여객선 <u>이용자 등에</u>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화물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.</u>

○ 입법 예고 확인

- 국회 의안정보시스템(<http://likms.assembly.go.kr>) 참조

○ 협회 담당자 : 김경훈 부장